

수원고등법원 2023. 12. 13 선고 2023나130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3. 12. 13 선고 2023나1303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2. 14 선고 2020가합105659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행난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김원진

변론 종결2023. 10. 25.

판결 선고2023. 12. 13.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2. 14. 선고 2020가합105659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가. 이 사건 소중 피고와 C 사이에, 2017. 5. 15.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7. 8. 24.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7. 8. 25. 체결된 5,200,000원의 증여계약, 2017. 10. 18. 체결된 27,000,000원의 증여계약, 2018. 1. 10. 체결된 31,000,000원의 증여계약, 2018. 7. 30.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피고에 대하여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와 C 사이에 2017. 7. 31. 체결된 17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① 2017. 5. 15. 체결된 2,000만 원의 증여계약, ② 2017. 7. 31. 체결된 1억
7,000만 원의 증여계약, ③ 2017. 8. 24. 체결된 1,000만 원의 증여계약, ④ 2017. 8. 25. 체결된
520만 원의 증여계약, ⑤ 2017. 10. 18. 체결된 2,700만 원의 증여계약, ⑥ 2018. 1. 10. 체결된
3,100만 원의 증여계약, ⑦ 2018. 7. 30. 체결된 2,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각각 취소한다.1) 나.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6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제척기간 도과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71201 판결 참조).

나. 원고는 2020. 12. 2. 채권자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수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를 추가하거나 철회하는 등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소 제기2020. 12. 2.	가. 피고와 C 사이에 ① 2017. 3. 13. 체결된 증여계약, ② 2017. 8.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각 266,049,29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나. 피고는 원고에게 266,049,290원 및 그중 103,698,000원에 대하여 2020.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변경	2022. 5. 9.
2023. 5. 26.	가. 피고와 C 사이에, ① 2017. 7. 31. 체결된 1억 7000만 원의 증여계약, ② 2017. 8. 10. 체결된 300만 원의 증여계약, ③ 2017. 8. 24. 체결된 1,000만 원의 증여계약, ④ 2017. 8. 25. 체결된 520만 원의 증여계약, ⑤ 18,883,484원의 범위에서 2018. 1. 10. 체결된 3,000만 원의 증여계약, ⑥ 2,784,220원의 범위에서 2018. 3. 20. 체결된 1,000만 원의 증여계약, ⑦ 22,728,328원의 범위에서 2019. 4. 24. 체결된 4,500만 원의 증여계약, ⑧ 1,534,162원의 범위에서 2019. 5. 21. 체결된 1,000만 원의 증여계약, ⑨ 2020. 8. 5. 체결된 1,680만 500원의 증여계약, ⑩ 2020. 8. 14. 체결된 360만 원의 증여계약, ⑪ 2020. 8. 19. 체결된 200만 원의 증여계약, ⑫ 2022. 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각 취소한다.나. 피고는 원고에게 267,844,9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23. 8. 3.	가. 피고와 C 사이에 ① 2017. 5. 15. 체결된 2,000만 원의 증여계약, ② 2017. 7. 31. 체결된 1억 7,000만 원의 증여계약, ③ 2017. 8. 10. 체결된 300만 원의 증여계약, ④ 2017. 8. 24. 체결된 1,000만 원의 증여계약, ⑤ 2017. 8. 25. 체결된 520만 원의 증여계약, ⑥ 2017. 10. 18. 체결된 2,700만 원의 증여계약, ⑦ 2018. 1. 10. 체결된 3,100만 원의 증여계약, ⑧ 2018. 3. 20. 체결된 1,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각각 취소한다.나.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6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23. 10. 13.	가. 피고와 C 사이에 ① 2017. 5. 15. 체결된 2,000만 원의 증여계약, ② 2017. 7. 31. 체결된 1억 7,000만 원의 증여계약, ③ 2017. 8. 24. 체결된 1,000만 원의 증여계약, ④ 2017. 8. 25. 체결된 520만 원의 증여계약, ⑤ 2017. 10. 18. 체결된 2,700만 원의 증여계약, ⑥ 2018. 1. 10. 체결된 3,100만 원의 증여계약, ⑦ 2018. 7. 30. 체결된 2,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각각 취소한다.나.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6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가 2023. 10. 13. 최종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① 2017. 5. 15.
체결된 2,000만 원의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처음으로 소구한 날은 2023. 8. 3.인 사실,
③ 2017. 8. 24. 체결된 1,000만 원의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처음으로 소구한 날은

2023. 5. 26.인 사실, ④ 2017. 8. 25. 체결된 520만 원의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처음으로 소구한 날은 2023. 5. 26.인 사실, ⑤ 2017. 10. 18. 체결된 2,700만 원의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처음으로 소구한 날은 2023. 8. 3.인 사실, ⑥ 2018. 1. 10. 체결된 3,100만 원의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처음으로 소구한 날은 2023. 5. 26.인 사실3), ⑦ 2018. 7. 30. 체결된 2,000만 원의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처음으로 소구한 날은 2023. 10. 1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각 부분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각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에 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모두 부적법하다(부적법하지 않은 부분은 2017. 7. 31. 체결된 1억 7,000만 원의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 청구뿐이다).

2. 기초사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삭제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C의 딸인데, C의 동생이자 피고의 외삼촌인 G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G계좌'라고 한다)에서 피고 명의의 I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피고의 I증권계좌'라고 한다)로 2017. 7. 31. 1억 7,000만 원이 입금(이하 '이 사건 입금행위'라고 한다)되었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부터 하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9, 10호증, 을 7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권 또는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D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D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갑 9호증의 1(차용증)에는 원고가 Y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D이 이에 연대보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D이 주채무자이고 D이 Y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을 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차용증 기재 일시에 Y가 D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차용증의 기재와 달리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또한 'Z가 원고의 부탁 및 보증하에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며 D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면서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바람에 원고가 D의 채무를 책임지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Z가 실제 D에게 지급한 금원은 1,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Z가 D에게 지급한 금원이 1,800만 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소유 부동산에 Z 명의의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말소된 사실, 이에 원고가 Z에게 3,1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원고가 D에 대하여 1,800만 원 이상의 구상금 채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D 사이의 구체적인 법률관계 및 정산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는 D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 채권 및 구상금 채권을 갖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는 2013. 10. 25.경 이루어졌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꾸준히 C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도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채권자를 '원고(구: D)'라고 기재한 점, ④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뒤에 제기된 점, ⑤ D이 C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⑥ 을 7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C가 사기죄로 기소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1544 사건에서 2021. 7. 15. "원고는 고소를 도와준 사람이다.", "원고와 직접 돈거래를 한 적은 없고 누구를 소개해서 이렇게 한 적은 있는지 모르겠다.", "이 사건 판결을 받고 나서 2013.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언이 원고에 대한 자신의 채무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아니고, 위와 같은 증언을 하면서 D이 "저는 다 잊으려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해서 잊으려고 했었습니다"라고도 증언한 것을 보면, 위 증언 당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 등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 원고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⑦ D이 2021. 8. 10. C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소송신탁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을 37호증)를 작성해 주었으나, 위 합의서는 C가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인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작성받은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가 원고로 하여금 D을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G계좌는 C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이므로, 이 사건 입금행위는 무자력 상태의 C가 피고에게 돈을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하 제5행의 '이 사건 C계좌'를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이 사건 C계좌'라고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하 제4행의 '송금되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C계좌로 돈이 송금된 것은 C가 독자적으로 제3의 투자자로부터 장외주식매입의뢰를 받아 피고의 조언에 따라 장외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G계좌는 C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C가 장외주식매입의뢰에 따른 대금 수령을 이 사건 G계좌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이 이 사건 G계좌가 C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7면 하 제2행의 '결제되기도 한다'를 『결제되기도 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하 제8행 이하의 '이 사건 제1, 2입금행위' 및 하 제4행 이하의 '이 사건 제1입금행위'를 모두 『이 사건 입금행위』로 각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하 제11행의 'AA증권'을 『N증권』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의 '있었고'부터 제6행까지를 『있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8행부터 제9행의 '이루어졌다.'까지를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금행위는 이 사건 G계좌에서 이루어졌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0행의 '2017. 7. 31. 및 2017. 8. 10.'을 『2017. 7. 3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하 제2행의 '산정하기로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① 피고는 C가 이 사건 G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이라면, G 명의 N증권 등의 계좌와 M(C의

배우자) 명의 계좌도 역시 C가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계좌의 잔액들 역시 적극재산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해당 계좌들이 C가 전적으로 사용·관리한 차명계좌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② 또한 피고는 C 명의로 AB으로부터 양수한 9,000만 원 상당 V 주식 20,000주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77, 7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입금행위 후인 2018. 1. 26. 위 V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입금행위 당시 위 주식이 C의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행의 '316,471원이고, '부터 제3항까지를 『316,471원이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6행의 '이고, '부터 제9항까지를 『이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0행부터 제13항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이 사건 입금행위 이후 이 사건 G계좌 및 이 사건 C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여러 개인 등으로부터 수시로 돈이 입금되고, 위 돈이 장외주식거래를 위해 출금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입금행위 이후에 있었던 사정에 불과하므로 재산처분행위 당시 C의 적극재산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1면 하 제5행의 '나아가'부터 하 제2항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행부터 제5항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입금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의 C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17. 1. 5.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G계좌에서 피고의 I증권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528,400,000원이다.

1	2017. 5. 15.	20,000,000
2	2017. 7. 31.	100,000,000
3	2017. 7. 31.	70,000,000
4	2017. 8. 10.	3,000,000
5	2017. 9. 6.	10,000,000
6	2017. 9. 6.	10,000,000
7	2017. 9. 7.	14,500,000

1	2017. 5. 15.	20,000,000
8	2017. 9. 26.	8,000,000
9	2017. 10. 16.	2,900,000
10	2017. 11. 29.	100,000,000
11	2017. 12. 28.	100,000,000
12	2017. 12. 28.	90,000,000
합계		528,400,000

위 기간 동안 피고의 I증권계좌에서 이 사건 G계좌 또는 G 명의의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448,650,000원이다.

1	2017. 2. 23.	100,000,000	의 증권계좌
2	2017. 4. 13.	100,000,000	이 사건 계좌
3	2017. 4. 13.	50,000,000	이 사건 계좌
4	2017. 4. 26.	63,000,000	이 사건 계좌
5	2017. 4. 27.	3,000,000	이 사건 계좌
6	2017. 5. 24.	2,000,000	이 사건 계좌
7	2017. 6. 12.	11,000,000	이 사건 계좌
8	2017. 6. 26.	1,300,000	이 사건 계좌
9	2017. 7. 3.	3,000,000	의 은행계좌
10	2017. 7. 19.	100,000,000	의 은행계좌
11	2017. 8. 8.	10,500,000	의 증권계좌
12	2017. 8. 9.	4,850,000	의 증권계좌
합계		448,650,000	

또한 위 기간 동안 피고의 I증권계좌에서 C 또는 M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72,150,000원이다.

1	2017. 4. 27.	150,000	
2	2017. 5. 23.	3,000,000	
3	2017. 7. 28.	10,000,000	
4	2017. 8. 10.	5,000,000	

1	2017. 4. 27.	150,000	
5	2017. 8. 18.	1,000,000	
6	2017. 9. 24.	5,000,000	
7	2017. 9. 29.	5,000,000	
8	2017. 10. 23.	3,000,000	
9	2017. 12. 28.	30,000,000	
10	2017. 12. 28.	10,000,000	
합계		72,150,000	

결국 위 기간 피고의 I증권 계좌로 입금된 528,400,000원과 피고의 I증권계좌에서 위 각 계좌로 송금된 금액의 합계액인 520,800,000원(= 448,650,000원 + 72,150,000)의 차액이 7,600,000원(= 528,400,000원 ~ 520,800,000원)⁴⁾에 불과하고, 이러한 금전지급행위는 모녀지간으로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C와 피고 사이에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동기도 피고의 비상장주식거래를 위한 것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입금행위만을 증여로 인정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그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또한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다) 판단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인정된 이 사건 G계좌에서 피고의 I증권계좌로 2017. 7. 31. 이 사건 입금행위가 이루어져 1억 7,0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피고 스스로도 피고의 I증권계좌는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계좌이고, 이 사건 입금행위로 송금받은 1억 7,000만 원을 주식거래 용도로 전액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의 그와 같은 주식거래로 인한 수익이 C에게 반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입금행위로 송금받은 1억 7,000만 원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는 2017. 1. 5.부터 2017. 12. 13.까지 피고가 C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528,400,000원이 피고가 같은 기간 C에게 지급한 금원인 520,800,000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C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피고가 이 사건 G계좌로 송금하였다는 2017. 4. 13.자 1억 5,000만 원과 2017. 4. 26.자 6,300만 원 중 5,000만 원에 대해 피고는 2022. 3. 7.자 준비서면에서 '2017. 4. 13. 피고의 I증권계좌에서 이 사건 G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이체한 후, G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매도인에게 이체하게 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의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2017. 4. 26. 피고의 I증권계좌에서 이 사건 G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여 역시 피고 소유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이체하게 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G계좌의 거래내역(갑 14호증)에도 위 금액이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C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2억 원은 피고 소유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C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G계좌 내지 이 사건 C계좌에 송금한 금원 외에 G의 다른 계좌나 M에게 지급한 금원을 C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기간 피고가 C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C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최소한 2억 원 이상 많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금융거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각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는, 위 각 금전지급행위가 피고의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서 그 동기가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금전거래행위가 모두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그렇다고 보더라도 각 개별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따라 금전지급이 이뤄졌을 것이므로 그 동기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에 C와 피고 사이에 증여 외에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지급할 만한 법률관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입금행위를 통해 송금한 금원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피고와 C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입금행위는 C의 잔존 적극재산 대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로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그 전후의 금전거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0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결국 피고와 C 사이에 2017. 7. 31. 체결된 1억 7,000만 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가 금전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C 사이에 2017. 7. 31. 체결된 1억 7,000만 원의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남양우

판사강은주

판사김건우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3차례에 걸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정리하였다.

2) 제1심 제6회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3) 2023. 5.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란에는 2018. 1. 10. 체결된

"3,000만 원"의 증여계약이라고 특정되어 있으나, 그 '청구원인'란에는 2018. 1. 10.자 3,1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의 2023. 10. 23.자 준비서면 제4면의 8,35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